

## 학생

### 학생 따돌림 (왕따)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는 학생들이 따돌림을 받지 않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행정인은 따돌림 방지를 위해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된 따돌림 사건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본 규정 목적은 적합한 예방 및 시정 조치를 위해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돌림 행동 과악에 대한 지원은 첨부 I, “따돌림 행동: 신체적 또는 정서적”에서 제공합니다.

#### I. 따돌림에 대한 정의

따돌림은 피해자를 공격, 위협 또는 창피를 주기 위한 공격적이고 불필요한 행동을 의미하며; 공격자들 간 또는 공격자와 피해자 간의 실질적 또는 인지된 힘의 불균형을 포함합니다. 또한 따돌림은 전자상 문자 및/또는 형상을 전송, 수신 또는 게재와 관련한 사이버 폭력을 포함합니다. 일상적 놀림, 거친 장난, 언쟁 또는 또래 갈등은 따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돌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야기하고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조롱, 위협, 모욕, 헐담, 굴욕, 놀리기, 밀기, 발 걸기, 때리기는 모두 따돌림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또 다른 형태의 따돌림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보통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 (예를 들어, 블로그 또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및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적대적으로 해로운 내용을 지지하는 전자상 대화를 통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위협; 비열, 저속 또는 위협 문자나 형상을 보내는 것을 포함;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한 사적 정보 게재; 특정 사람의 평판이 나빠지도록 다른 사람을 사칭; 온라인 개인 투표 웹사이트에서 명예를 손상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용납되지 않는 테크놀로지 사용은 학교기관 운영 또는 일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교육 과정에 영향을 주고 학생, 직원 또는 학교 소유지의 안전 및 복지를 위협하고 학생이 학교가 법적으로 부모의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발생하고 또는 학생이나 교직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을 포함합니다. 위반 학생은 최고 정학 및 퇴학을 포함한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 II. 불평 제기 절차

따돌림 행동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학생에게는 따돌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불평 사항을 접수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교 행정인은 각각의 불평을 조사하고 위의 정의에 따라 불평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한 시정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행정인에게 알리거나 불평 제기 양식 (첨부 II)을 작성하고 학교 행정인에게 제출하여 불평 제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은 행정인과 논의 및/또는 불평 제기 양식 (첨부 II) 작성을 통해 따돌림을 보고한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를 대신하여 불평 제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은 불평 제기를 시작하는 학생 권리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고 불평 제기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학생에게 조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행정인은 다음 지침에 따라 따돌림에 대한 불평에 대응해야 합니다.

## III. 학생 따돌림에 대한 불평 대응 지침

따돌림에 대한 보고가 접수되면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즉시 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 차원의 임명된 따돌림 방지 코디네이터는 불평 해결, 면담 기록 및 학교장에게 보고서 제출을 통해 학교장을 지원합니다.

### A. 불평 제기자와의 만남

1. 기본 정보 (대상, 의도, 일시, 장소) 확인;
2. 가능한 경우 학생의 서면 진술서 확보;
3. 증인 또는 확증 정보/증거 요청;
4. 적합한 경우 상담 서비스 제공;
5. 보복 방지에 대한 확신 제공;
6. 후속 절차 설명;
7. 가능한 최대로 모든 당사자의 기밀 유지 및 신변 보호; 및
8. 사건 발생 48시간 이내에 위험 관리 및 보안 서비스 사무처로 작성한 사건 보고 접수.

### B. 증거 검토 및 증인(들) 면담

### C. 따돌림 혐의자와의 만남

1. 따돌림 행동 및 심각성 설명;
2. 혐의 제시;

3. 대응/반박 기회 제공;
4. 조사 및 후속 절차 설명;
5. 보복에 대한 주의;
6. 적합한 시정/징계 조치 부여; 및
7. 필요할 경우 정학/사건 보고서 작성.

D. 다음은 사실 수집 및 평가에 포함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행동 본질을 포함한 사건(들) 설명;
2. 행동 발생 빈도;
3. 이전 사건 또는 이전부터 지속된 행동 유형 여부;
4. 관련 당사자 간의 관계;
5. 관련 당사자의 특성 (예, 학년, 연령, 성별, 민족 등);
6. 따돌림 또는 괴롭힘 행동에 가담한 학생 신원 및 인원;
7. 혐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 시간 및 날짜; 및
8. 행동이 학생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교육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공격 대상이 된 학생의 성적, 출석, 품행, 동료와의 상호 관계, 학교 활동 및 과외 활동 참여, 기타 수행 및 행동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

교직원은 기록 날짜, 시간, 장소, 증인 이름, 기타 면담 및 사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학생과의 모든 만남과 대화의 서면 기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벗어난 모든 것은 특별한 정황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행동 또는 사건이 따돌림 방침 및 "행동 강령" 위반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보고서는 사실 및 주변 정황에 기반한 결정이 필요하고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따돌림 및/또는 괴롭힘 행동 중지를 위해 필요한 권고 단계;
2. 안전 계획 및 피해자와의 후속 회의;
3. 학교장에게 최종 보고.

E.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통보

따돌림 혐의 사건에 연류된 모든 학생의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는 따돌림 혐의가 밝혀진 후 가능한 빨리 학교 수업일로 5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F. 따돌림 사건에 연루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따돌림은 인권법에 따라 괴롭힘으로 간주되고 추가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는 따돌림 영향의 결과에 따라 학생의 필요성의 변경 여부 및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은 더 이상 의미있는 교육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결정은 IEP팀이 내려야 하고 장애인 교육법 학부모 참여 조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G. 조사 결과 보고

다음은 세가지 가능한 결과입니다:

1. 시정 조치 – 사건이 따돌림 방침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 정해진 징계 절차에 따라 적합한 결과 및/또는 중재가 시행되어야 함. 소정의 조치는 따돌림 예방 및 개선을 위해 마련되어야 하고 행동 맥락 및 심각성에 적합한 수준의 중재를 포함해야 함. 시정 조치는 사건의 심각성, 이전 사건 및 향후 따돌림으로부터 피해자 및 다른 학생을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 훈계부터 정학 또는 퇴학까지 내려질 수 있음. 따돌림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합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2. 사건이 따돌림 방침 범위를 이탈 및/또는 범죄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적합한 법 집행 기관 및 위험 관리 및 보안 서비스 사무처로 회부해야 함.
3. 사건이 교육기관의 방침 범위를 이탈하지만 범죄 행위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모든 관련 학생들의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함.

IV. 다른 법규와의 관계

학교기관은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대해 모든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합니다. 이 방침의 어떠한 내용도 학생,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교기관이 지역,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된 단계에서 개인 성별 또는 구성원에 따라 괴롭힘 또는 차별을 개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V. 보복으로부터 보호

학생은 가해자로부터 보복의 두려움없이 따돌림 사건을 자유롭게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보복 시도는 퇴학까지 포함하여 적합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VI. 항소 절차

양측 당사자는 따돌림 행동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학교 행정인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는 학부모(들)/보호자(들) 또는 독립한 학생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학부모(들)/보호자(들) 및 독립한 학생은 방침 731,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 및 규정 731-1,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에 따라 해당 단계 부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에 추가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VII. 통보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따돌림 행동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행동 강령"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 행정인은 따돌림 금지 및 불평 제기 절차를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공지, 소식지, 직원 회의 또는 기타 적합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기관 웹사이트는 따돌림 보고에 대한 정보 및 학교기관의 따돌림 예방 코디네이터 연락 정보를 잘 보일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은 해당 행동의 피해자인 모든 미성년 학생의 부모(들)/보호자(들)에게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사건이 지역법 집행기관에 보고된 사실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추가 정보를 위해 지역법 집행기관에 연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VIII. 학습

사회 과목 및 유치원-12학년 상담 교과과정을 통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행동 강령" 학습을 통해 따돌림의 부적절성을 다루어야 합니다.

IX. 예방 대책

A. 모든 교직원이 학생 및 직원의 소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따돌림은 방지될 수 있습니다:

1. 따돌림 행동이란 (정의);
2. 따돌림은 용인될 수 없음;
3. 그에 따른 결과;
4. 불평 보고 방법;
5. 불평을 다루는 방법; 및
6.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통보.

B. 행동 감독 및 규칙 강화

1. 불평은 즉시 공평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조치.
2. 따돌림을 당한 경우 학생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려줌:
  - a. 가해자에게 그러한 행동을 원하지 않음을 매우 분명하게 알림.
  - b. 가해자에게 매우 단호하게 멈추라고 말함.
  - c. 실제 따돌림 사건과 관련된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이름, 기타 정보를 서면으로 기록해 둠.
  - d. 메모, 편지, 기타 따돌림의 증거를 보관함.
  - e. 상담 교사 또는 행정인에게 말하고 적합한 경우 불평을 접수함.

C. 교사진 및 직원 교육

1. 따돌림 파악, 중재 과정, 보고 절차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연례 교육을 진행해야 함.
  - a.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행동 강령”은 학생, 가족, 교직원을 위해 따돌림의 정의, 염려 보고 절차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b. 각 학교에 임명된 따돌림 예방 코디네이터는 연례 전문성 개발 연수에서 따돌림 파악, 중재 과정, 보고 절차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킴.

- c. 따돌림 예방 훈련, 연구 기반의 프로그램 활용 및 기법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임.
  - d. 학교기관의 따돌림 예방 코디네이터는 따돌림 행동 파악, 중재 과정, 보고 절차 및 그에 따른 결과를 다루는 온라인 따돌림 예방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학습 사무처와 협력할 것임.
- 2. 노력 및 프로그램 편성을 평가 및 수정하기 위해 학생, 교사진, 직원,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학교기관 연례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임.
  - 3. 연구 기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학교는 중재 효과를 평가하고 노력 및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임.
  - 4. 교육기관 차원의 따돌림 예방 코디네이터는 책무 사무처와 협력하여 이러한 노력을 평가할 것임.

X. 따돌림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상담 의뢰 절차

공식 의뢰 절차는 따돌림 또는 괴롭힘이 의심되거나 따돌림 사건이 보고될 경우 중재를 위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성 훈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부터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학생까지) 사건의 잠재적 심각성의 범위에 적합한 지속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 1. 조기 의뢰를 위한 명확한 의사 소통 절차;
- 2. 다음을 포함한 적합한 학교 기반 서비스를 고려하기 위해 학교 중재 팀으로 의뢰:
  - a. 괴롭힘 또는 따돌림 피해자의 필요를 다루기 위해 학생 서비스 지원 담당자 또는 상담 교사가 제공하는 상담 및 지원;
  - b.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괴롭힌 학생의 행동을 다루기 위해 연구 기반의 상담/중재 (예, 공감 훈련); 및

- c.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부모(들)/보호자(들)이 제공하는 도움과 지원을 포함한 연구 기반의 상담/중재.

행정인 및 모든 교직원은 각자의 권한 안에서 지속적 규정 적용 및 가능한 최대한으로 학생의 비밀 보장을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 및 해당 단계 부교육감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따돌림 행동: 신체적 또는 정서적

때리기, 주먹질, 찌르기, 밀치기, 꼬집기, 쏘시기, 발로 차기, 목 조르기, 원치 않는 접촉, 차단하기, 쫓아가서 구석에 가두기, 발 걸기, 파손하기, 흠치기, 그래피티 쓰기 (공유지 및 사유지에 컴퓨터 또는 기타 기법 사용)는 신체적 따돌림에 포함됩니다.

욕하기, 위협하기, 조롱하기, 악의적으로 끊임없이 놀리기, 소문 퍼뜨리기, 비웃기,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따라다니며 괴롭히기, 얼굴을 찌푸리거나 음란한 몸짓하기, 인종적, 종교적, 성적 견해로 불쾌감 주기, 집단 공격하기, 비하하기, 한 집단이나 활동에서 다른 학생을 집요하게 배제하기 (소외시키기), 무시하기, 거짓말하기는 정서적 따돌림에 포함됩니다.

다음 행동 또한 따돌림에 포함됩니다:

- I. 따돌림 행동을 주장 또는 혐의 제기를 통해 다른 학생이 또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보복. 따돌림 또는 괴롭힘에 대한 의도적 거짓 보고는 보복으로 간주됩니다.
- II. 다음에 의해 정서적 또는 신체적 상해를 주는 처신을 하고 비인간적으로 난처하게 하고 원인을 제공할 의도로 개인 또는 집단으로 따돌림 또는 괴롭힘의 정의에 나열된 행동을 지속:
  - A. 조장 (선동);
  - B. 자극; 또는
  - C. 강압 (강요).

학교기관 시스템 범위 안에 있는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접근 또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접근을 야기 또는 제공하고 따돌림의 효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 (예, 신고식).

참조: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 "버지니아주 학교에서의 따돌림을 다루기 위한 방침 모델"  
2012년 10월, 3페이지.

따돌림에 대한 불평

따돌림은 피해자를 공격, 위협 또는 창피를 주기 위한 공격적이고 원치 않은 행동을 의미하며; 공격자 간 또는 공격자와 피해자 간의 실질적 또는 인지된 힘의 불균형을 포함합니다. 또한 따돌림은 전자상 내용 및/또는 형상을 전송, 수신 또는 게재와 관련된 사이버 폭력을 포함합니다. 일상적 놀림, 거친 장난, 언쟁 또는 또래 갈등은 따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행동 강령”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따돌림에 대한 불평 제기는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학생은 행정인과의 상의 및/또는 본 양식을 작성하고 교감 또는 교장에게 제출하여 불평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은 따돌림을 보고한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를 대신하여 본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자로 기입하기 바랍니다.

불평 제기자 이름: \_\_\_\_\_

학교: \_\_\_\_\_

따돌림에 대해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 \_\_\_\_\_

불평 기입 (가능하다면 자세한 날짜, 시간, 증인 이름 등을 기입):

\_\_\_\_\_

\_\_\_\_\_

\_\_\_\_\_

불평 제기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참고: 모든 불평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혐의가 있는 사람과 더불어 관련 학생의 부모(들)/보호자(들)에게 제기된 불평을 알리고 증인을 면담할 것이며 조사의 일부로 공유해야 하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기밀이 유지될 것입니다.